

보도	2024.1.30.(화) 조간	배포	2024.1.29.(월)	
담당부서	가상자산조사국 가상자산조사팀	책임자	팀 장	도영석 (02-3145-7192)
		담당자	수석조사역	강세라 (02-3145-7193)

「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」 개편

- **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**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**인지**하고,
체계적으로 **대응**하여 이용자 **피해 예방**에 노력하겠습니다 -

< 주요 내용 >

-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**가상자산**을 이용한 **불법행위**를 신속히 **적발·조치**할 수 있도록 「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」를 운영하여 왔음
 - 분석 결과 '23.6.1.~12.31. 기간 중 총 **1,504건**(월평균 215건)의 신고가 **접수**되었으며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**수사당국**에 자료 **제공**
- **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**(24.7월)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, 시세조종, 부정거래 등 **불공정거래** 행위에도 **적극적**으로 **대응**할 필요가 있어 동 신고센터를 「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」로 **개편**하고, 투자사기 외에 **불공정거래 신고**도 접수받고자 함
 - 앞으로 **불공정거래 신고 접수**건은 **수사당국** 등과 긴밀히 **협력**하여 **체계적**으로 **대응**할 계획
- 금융감독원은 **신고센터 개편**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**불법행위**를 **신속**하게 **인지**하여 **엄정**히 **조치**할 예정

《「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」 접수 방법》

☞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⇒ 민원·신고 ⇒ 불법금융신고센터 ⇒ 「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」 클릭

I 배경

-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과 연계된 각종 투자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「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」를 설치·운영 중(23.6월~)
-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나날이 지능화·교묘화되며,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
 - 한편,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(24.7.19. 예정)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*는 자본시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사 및 제재 예정
 - *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, 시세조종,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
-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「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」로 개편하여 운영함으로써
 - 다양한 유형의 제보를 신속히 인지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·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,
 - 향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단서로 활용하고자 함

II 주요 개편 방향

1 통합 창구 운영

- 기존 신고센터를 「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」로 개편하여,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
 -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여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, 신고 유형에 따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응

2 수사지원 및 공조 강화

- 신고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하여,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 제공
-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,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

3 소비자 피해 예방

-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의 사기수법 등은 소비자 경보를 적시에 발령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
- 신고센터 화면을 개선하여 관련 법규,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등을 게시하고, 제보사례 등을 상시 업데이트하여 이용자 이해도 제고

4 불공정거래 조사 활용

- 신고센터 접수 체계를 정교화하여 접수 시 신고자가 불공정거래 유형을 선택하고, 신고 항목도 세분화하여 제보의 구체성 제고
-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

5 유관기관 협력 강화

- 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특이 동향 등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대응체계 마련

- 「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」는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'24.1.30.부터 운영
 - ☞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⇒ 민원·신고 ⇒ 불법금융신고센터 ⇒ 「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」

- 금융감독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
 -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

신고 접수 · 처리 현황

- (접수현황) '23.6.1.~12.31. 기간 중 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수 및 유선상담 건수는 총 3,228건(홈페이지 신고 1,504건, 유선상담 1,724건)

《월별 접수건수》

(단위 : 건)

구 분	'23.6.	'23.7.	'23.8.	'23.9.	'23.10.	'23.11.	'23.12.	합 계
홈페이지	240	194	183	179	218	181	309	1,504
유선상담*	209	158	227	226	266	335	303	1,724
합 계	449	352	410	405	484	516	612	3,228

* 유선상담은 대부분 단순 상담 및 홈페이지 신고 접수 방법 등에 대한 문의임

- (유형별 분류) 신고 내용은 주로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사기, 유사수신 행위, 불법 다단계 등 다양
 - 고수익을 보장한 투자금 편취가 37.3%(561건)으로 가장 많고, 허위광고 19.5%(293건), 사업성 의문 8.9%(134건) 順

《유형별 신고건수(홈페이지 접수 기준)》

(단위 : 건, %)

	고수익보장	허위광고	사업성의문	피싱	직원사칭	기 타*	합 계
건 수	561	293	134	48	16	452	1,504
구성비	37.3	19.5	8.9	3.2	1.1	30.1	100.0

*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, 해킹, 로맨스 스캠, 기타 일반사기, 가상자산 관련성이 없는 제보 등

- (처리현황) 신고센터 접수 건 중 투자사기 의심 사항에 대해 수사 기관에 자료를 공유하고, 특이사례는 업무정보 제공
 - 유사한 내용이 다수 접수되거나, 금융소비자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 소비자 경보 발령

주요 신고 사례 및 이용자 유의사항

〈사례 1〉 가상자산 상장 사기

- (신고내용) 특정 가상자산이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으로 향후 가치가 수백 배 상승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집
 - 상장 전 프리세일 기간 등에 특별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면서, 피해자들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대량 구매하도록 종용*
 - * 다만 '락업(보호예수)' 등 사유를 대며 일정기간 동안 매도를 제한
 - 발행사 및 관련자들은 상장 후 가장·통정매매 및 호재성 허위 공시 등으로 가격을 급격히 높인 상태에서 보유한 코인을 고가에 대거 매도하여 수익을 취득하고, 피해는 매도가 제한된 투자자들에게 전가
- (유의사항) 가상자산의 장외거래는 정보가 불투명하여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

〈사례 2〉 가짜 거래소 · 스캠 사이트

- (신고내용) 가상자산거래소를 빙자한 가짜 모바일 앱 또는 웹 사이트를 만들고 SNS 홍보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도
 - 거래소 지갑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가상자산을 구매하여 거래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*하고, 초기에는 소액을 인출할 수 있게 하여 신뢰 형성
 - * 데이터 조작을 통해 거래가 체결되고 차트상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장
 - 이후 이용자가 투자금을 늘리고 거액의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자의적인 사유로 출금을 거절하거나 앱 접속 차단 및 웹사이트 폐지
- (유의사항) 이름이 생소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일단 의심하고,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거래소인지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
 - ☞ 거래소 신고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(FIU) 홈페이지(kofiu.go.kr)에서 확인

〈사례 3〉 불법 다단계·유사수신

- **(신고내용)** 신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홍보하면서 관련된 가상자산 투자로 원금보장 및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를 현혹
 - 지인들을 소개하면 일정 비율의 모집 수당을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다단계로 투자금 유치
 - 투자 초기에는 수익금이 발생*하거나 소액 출금은 처리해 주지만, 투자 원금을 늘린 후 출금을 신청하면 사이트 폐쇄, 연락 두절
- * 주로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'돌려막기' 등 폰지 사기 수법을 이용
- **(유의사항)** 사업 내용이 의심스러운 업체에 묻지마 투자를 유의하고, 설령 업체에서 원금보장 약정 등을 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음을 명심

〈사례 4〉 리딩방 사기

- **(신고내용)** 주식 리딩방(카카오톡, 텔레그램)에서 주식 손실을 본 회원들에게 접근하여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
 - 리딩방 운영자가 투자전문가로 행세하거나, 공범(바람잡이)들이 수익 인증글이나 캡처*를 다수 올리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음
- * 포토샵으로 조작한 거래소 화면 등 가짜 인증 사진
-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에게 종목 추천과 투자를 해주겠다며 VIP방 등 1:1 리딩방으로 초청하고, 회원비 및 투자금을 받아 초기에는 소액 수익이 나는 것처럼 기망하다 더 큰 금액을 입금하면 돌연 반환을 거절하거나 채팅방 폐쇄
- **(유의사항)** 실체가 모호한 '투자전문가'의 투자 자문에 유의하고,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리딩방 초대는 의심할 필요

〈사례 5〉 로맨스 스캠

- **(신고내용)** SNS에서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뒤, 친분을 쌓아갈 무렵 가상자산 투자를 제안
 -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 내역을 보여주며 관심을 유발한 뒤 특정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(불법 거래소 등)에 가입을 유도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송금을 권유
 - 투자 지시 및 소액 출금 등을 통해 신뢰를 쌓은 후 차차 투자금을 증액 하도록 유도하나, 추가 입금 후 수익금을 인출 신청 시 해당 사이트에서 출금이 거부되고 혐의자는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
- **(유의사항)** 비대면으로 알게 된 사람일수록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, 투자권유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

-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하여 법상 불공정거래 예시 및 투자사기 유의 사례 등을 게시

[신고센터 개편 화면]

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

- 이용안내
- 신고하기
- 신고내역조회

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

•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와 관련된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신고하기

신고내역조회

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

•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(‘24.7.19.) 이후 아래의 행위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i

- ▶ **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**
가상자산사업자,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및 임직원이나 대리인, 주요주주, 가상자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자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(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)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(법 제10조 제1항)
- ▶ **시세조종행위**
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,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매매와 동정매매,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, 시세를 고정 및 변동시키는 행위 (법 제10조 제2항, 제3항)
- ▶ **부정거래행위**
가상자산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, 계획, 기교를 이용한 행위,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나 누락 등 행위,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(법 제10조 제4항)
- ▶ **자기발행 가상자산 매매행위**
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(법 제10조 제5호)

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※ 출처: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23.8.3.)

- 비상장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며 투자 권유 후 투자금 편취
-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재단이 상장 전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 상장 후 재단 관련자들 대량 매도로 가격이 폭락하여 투자손실 발생
-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
-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도록 하여 해킹으로 가상자산 탈취
-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있는 가상자산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로 투자를 권유한 뒤 자금 편취

신고방법

 <p>온라인 문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(https://www.fss.or.kr)인원· 신고 > 불법금융신고센터 >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</p>	 <p>우편 문의 (우 : 07321)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우38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과</p>	 <p>전화문의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1332 + 9번</p>
---	---	--

□ 접수 시 불공정거래 또는 투자사기 유형을 선택하게 하고, 신고 내용 입력 항목을 세분화

신고 필수 입력 사항

가상자산명	<input type="text"/>
거래소 상장여부	<input type="radio"/> 국내거래소 <input type="radio"/> 해외거래소 <input type="radio"/> 미상장
사건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불공정거래 유포 <input type="checkbox"/> 미공개정보이용(내부자거래) <input type="checkbox"/> 시세조종(가장, 흥정매매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정거래(거짓표시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자기발행 가상자산 매매 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사기 유형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고거래소 <input type="checkbox"/> 리딩밭 <input type="checkbox"/> 피싱(앱, 사이트)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사수신/다단계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text"/>